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드론작전사령부령전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국방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국방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여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특히,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국방드론본부 설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1) 국방 드론·대드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 개선에 따라 국방드론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소속 및 지휘체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임무와 책임을 규정(안 제2조)

- 1) 국방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 실증,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 수행의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본부장 등의 임명을 규정(안 제3조)

- 1) 본부장, 차장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신분과 직급을 규정하여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라. 조직의 구성을 규정(안 제4조)

- 1) 소속 부서와 부대의 설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마.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을 규정(안 제5조)

- 1)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방드론본부령

제1조(설치) 국방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와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드론본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드론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에 관한 업무
2. 드론·대드론 체계 실증과 획득지원에 관한 업무
3. 드론·대드론 분야 민군협력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업무

제3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국방드론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각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방드론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고,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국방드론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  
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호의3을 삭제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방드론본부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
| 연 락 처       | (02) 748 - 6577 |